

1.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되고,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 호, 2024. . . 공포, 2024.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국장·기획조정관·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2)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우주항공임무본부에 임무지원단장,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 등 5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우주환경센터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안 제11조 및 제12조)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우주환경센터의 분장사무를 정함

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우주항공청에 24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231명)의 정원을 두고,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에 32명(4급 이하 32명), 우주환경센터에 20명(4급 이하 20)의 정원을 둬.

라. 평가대상 조직(안 제16조 및 별표 4)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정책국 3개과,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국 3개과, 우주항공임무본부 및 우주항공임무본부 4개 부문장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평가기간은 2027년 5월 26일까지로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주항공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조정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7.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관리
8.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9. 세출 집행예산의 총괄 관리
10.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2. 정부혁신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3. 적극행정·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업무처리 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소관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부업무평가 등 업무평가의 총괄·조정

8.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총괄

9.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0.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1. 입법계획의 수립·관리 및 국회 입법 지원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총괄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4. 규제개혁의 수립·추진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15.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16.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우주항공 분야 국제협력 및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2. 우주항공 분야 해외 정책·기술·시장동향 정보의 수집·분석·생산·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 분야 국제조약·협약·협정의 이행

5. 우주항공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 분야 국제 인력교류, 해외 전문가 유치 및 우주협력 해외

사무소 설치·지원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분야 국제규범 협력·이행에 관한 사항
9. 우주항공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분야 남북한 협력에 관한 사항
11.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분야 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 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협정의 체결 추진, 통상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정책·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평가
3.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업무 계획 수립·시행
5.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실태점검
6.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운영
7.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8. 청 내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

가 총괄

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청 내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2.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4.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의 운영
 5. 여객용·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6. 우주항공 분야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7. 우주항공 분야 민·관 협력 및 역량고도화 방안 마련·지원
 8. 우주항공 분야 민·군 협력사업의 기획·추진
 9.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0.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관리
 11. 우주항공 분야 동향 조사·분석,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및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분야 타 법령·제도의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보완 협의
 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우주항공기술 관련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우주항공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활용 정책의 수립·추진

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3. 우주항공 인력양성 및 과학문화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운영·발전
 4.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5. 국가위성정보활용 인력양성 계획 수립·시행
 6. 국가위성정보활용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7. 우주항공 인력 및 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총괄
 8. 우주항공 분야 직무표준의 개발·관리 및 전문 자격제도 운영
 9. 우주항공 분야 과학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 및 과학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우주인 육성·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우주과학관 관리 및 개선 지원
-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손해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우주위험대응체계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4. 우주교통관제로드맵 등 우주상황인식·위성운용 전략 마련
 5.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 우주환경 보호·감시체계의 구축·운영

7.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8. 운석의 등록 및 관리
9. 인공 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운송 등)의 우주공간 운영 허가·신고 및 이행점검
10. 우주쓰레기 저감 관련 규제 마련
11. 우주물체 추락·충돌, 우주환경 변화 관련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2. 우주위험 관련 민·관·군 재난대비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13.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4. 우주발사체 발사 시 안전통제 및 발사 사고 조사
15.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우주안전 및 우주활동의 장기지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17. 우주환경센터 협력 및 지원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2. 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통계·현황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산업 수출진흥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 우주항공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 사절단 파견 등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민간 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기술의 도입·교류, 사업화 촉진 등 기술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등 우주항공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산업의 공급망 감시·관리·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우주항공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10. 우주항공산업 정책금융,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 기업 대상 각종 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의 지원 및 통상 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항공산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 기술·제품의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이행

2. 우주 수송·여행 서비스의 개발·확산
 3. 바이오·신소재 등 기초과학과 우주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확보 지원
 4. 민간 발사체·인공위성 산업의 활성화 지원
 5. 혁신항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6.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수립 및 근거법령·규정 총괄
 7.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운영
 8. 위성정보활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
 9. 위성정보 민군협력 및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성정보 수신·처리·보급 및 인공위성 영상 검·보정 등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운영
 11.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위성정보에 관한 보안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14. 우주항공분야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이행 및 제도 개선에

- 관한 사항
2. 우주항공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제·개정
 4.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의 산·학·연 정책협의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의 지역간 협력 촉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기술·소재·부품·제조공정 등 산업 표준화 지원 및 인증체계 구축·운영
 7. 우주항공 기술·소재·부품의 시험·인증기관 지정·활용·육성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기술·소재·부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우주항공분야 표준·시험·인증 관련 국내외 활동, 국내외 기관과 교류 및 상호인정 협정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분야 표준·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산업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12. 우주항공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지원사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창업 전문기관 연계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장)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임무지원단장·우주수송부문장·인공위성부문장·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으로 하며, 임무지원단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수송부문장·인공위성부문장·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임무지원단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10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인공위성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0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

조제3항제27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⑦ 항공혁신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위성운영센터에 기획총괄팀·위성운영팀·영상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위성운영센터 업무의 총괄
2. 국가위성의 관제·운영 관련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가위성의 운영·활용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확산·홍보
4. 국내·외 인공위성 관제·운영·활용에 관한 동향 분석
5. 국가·민간위성 등록·관리업무 지원
6. 센터 내 시설보안, 정보보안, 문서보안 관련 체계 수립·관리

7. 보안내규 및 비밀취급 관련 규정 수립·관리
8. 국가위성관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관리·고도화
9. 국가·민간위성운영·활용에 관한 국제기구 협력 지원
10. 센터 내 인사·조직·문서·교육·복무 및 관인관리
11. 센터 내 예산·결산·회계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2. 센터 내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와 지상국 구축·운영
2. 국가위성의 위성별 임무·명령계획 조정 총괄
3. 민간 인공위성 및 우주탐사선 등의 관제·운영 지원
4. 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가위성 궤도·주파수 관리 지원 및 위성 궤도·자세 등 기능상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6. 국가위성 궤도보험 계약 체결·연장·해제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위성 임무연장·종료 결정 등 수명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민간위성·우주물체의 충돌방지 등 위기감시·대처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9. 부처 위성센터 간 위성운영에 관한 협력업무 지원
10.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고도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11. 국가위성 지상국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범부처 위성정보 관리·활용체계 구축·운영
2. 위성정보의 수신·처리·보급
3. 안보부처 활용 위성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수출승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 가격 및 판매대상 결정 등 상용 판매 계획 수립 지원
6. 위성정보 판매대행사 및 수익금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 품질 관리정책 총괄
8. 국가위성 초기 운영 검·보정 실시 및 검보정사이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9. 미래위성정보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0. 위성정보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해외 위성정보 교환 협력·지원
12. 해외 수출입 위성정보 보안 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가·민간위성활용 부처 및 산업체 보안시스템 점검·관리·현장실사 지원

제4장 우주환경센터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① 우주환경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조정
2. 우주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평가, 예·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관련 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협력 지원
5.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표준화
6. 우주환경 변화로 인한 우주전파재난 대응
7.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
8. 우주전파재난 상황 전파체계 구축·운용
9. 우주환경 관측시설 구축 및 운용·관리
10.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처리·보존 및 국내외 분배·교환
11. 우주환경 분석·예측모델 개발 및 운용
12. 우주환경 홍보 및 우주전파재난 대국민 인식제고
13. 우주환경 정보시스템 운용·관리 및 개선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5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38명, 6급 40명, 7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별표 2의 정원 중 20명(4급 1명, 5급 1명, 6급 9명, 7급 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별표 3의 정원 중 10명(5급 2명, 연구사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6조(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제8호의4서식,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제8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로 한다.

②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 우주항공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우주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41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24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1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8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8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2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기상서기·환경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기상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
운전서기보	3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기획 담당)	1

■ 우주항공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국가위성운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2
일반직 계	3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9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기상서기·환경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기상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운전서기보	1

■ 우주항공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총계	20
일반직 계	20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기상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
공업연구사	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항공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기상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사무운영주사보	1

■ 우주항공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6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우주항공정책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2.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정책과	8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3.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4. 우주항공정책국 우주위험대응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5. 우주항공산업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6.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7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7.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7명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8.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9. 우주항공임무본부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10. 우주수송부문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11. 인공위성부문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12. 우주과학탐사부문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
13. 항공혁신부문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7년 5월 26일 까지